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603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6구합564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2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1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당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20조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20조의 신고의무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부상 소유자 스스로가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일 뿐,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미리 그와 같은 안내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1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